

일본 수출규제 계기 복무점검 계획

(감사실, '19.8.22.)

1. 점검목적

- ☐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감행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,
 - 공사 직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 필요

2. 점검개요

- ☐ 점검기간 : '19. 8. 23.(금), 8. 26.(월) 【2영업일】
- ☐ 점검인원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감사역
- ☐ 점검대상 : 총 21개 부서

구 분	대 상 부 서	비 고
부산	○ 홍보비서실, 채권관리실, 보증이행처, 기금관리실, 기금지원처, 도시재생운용처, 도시재생기획처, 리스크관리단, 준법지원실, 기금정보처, 정보운영처,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, 기금대출지원센터	13개 부서
서울	○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,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,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,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, 동부PF금융센터, 서부PF금융센터, 서울북부관리센터,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	8개 부서

※ 감사역별 업무분장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
3. 중점 점검사항

(1) 복무기강 해이 및 업무해태 행위

- 출·퇴근시간(유연근무자 포함) 미준수, 무단이탈·장기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
-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잘못된 출장 관행(과다 출장, 귀가 편의를 위한 출장 등), 출장·외출 시 근무상황 처리 미흡사례 등
- 민원처리 지연·방치 등 업무해태, 복지부동, 무사안일, 소극 행정

(2) 공직비위 및 품위훼손 행위

-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, 부정 청탁·알선, 성 비위 등 공직비위
- 음주소란, 폭력, 갑질 행태, 정치권 줄대기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·언행
- 對日 현안 관련 공식 석상에서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행
- 기타 「청탁금지법」,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위반 행위

(3) 보안 및 안전관리 미흡 사례

- 일일보안일지 미작성, 각종 비밀번호 노출, 고객정보 방치·유출, 용역업체 보안통제 소홀 등 보안관리 부적정 사례
- 내부자료 방치, 유출(SNS·언론 등) 등 문서관리 부적정 사례
- 중요인장·열쇠, 금고 등 관리 부적정 사례
- 재난·사고 예방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, 비상대비 태세 등 점검

(4) 기타 청렴·조직문화 저해 행위

- 위법·부당한 예산 사용 행위 (※ 2018년도 내부청렴도 취약 부문)
- 초과근무 강요,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행위

4. 점검결과 조치

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

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조치
- 국토교통부를 경유하여 국무조정실에 점검결과 제출*

*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강화 요청('19.8.8,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)

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 사내전산망 등록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

[첨부]

확 인 서

1. 제 목 : 일본 수출규제 계기 복무점검의 건
2. 내 용 :

감사실에서 실시한 '일본 수출규제 계기 복무점검'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복무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.

순번	직책	성명	복무현황

2019년 월 일

확인자 소속 직 성명 (인)

확인자(부서장) 소속 직 성명 (인)